

국 토 교 통 부

훈계·시정 요구

제 목 ○○-○○간 진입도로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김해시

관 련 자 김해시 ○○과(전 ○○과)

지방○○서기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서기 ○○○은 2014. 1. 1.부터 2014. 10. 8.까지 ‘○○ ○○-○○간 진입도로 정비공사’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.

경상남도 김해시(○○과)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사업비의 40%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013. 11. 28. ○○○도 ○○시 ○○○○구 ○○○로○, ○○○호에 있는 ○○○○○○(주)(대표자 ○○○)과 ‘○○-○○간 진입도로 정비공사’를 총 공사부기금액 186,580,000원¹²⁴⁾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11. 28. 착공하여 2014. 9. 27. 준공하였다.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,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

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, 같은 법 제31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

¹²⁴⁾ 2014. 10. 10. 준공검사 결과 179,021,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어 준공됨

부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또한, 국토교통부 및 경상남도에서 김해시에 통보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‘○○-○○간 진입도로 정비공사’ 사업비는 김해시 ○○면 ○○리 일원에 도로개설(L=900m, B=8m)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였다.

따라서, 김해시에서는 ‘○○-○○간 진입도로 정비공사’를 시행하면서 국고보조금이 교부목적과 다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.

그런데도 김해시에서는 2014. 10. 8. 위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면서 계약상대자인 ○○○○○○(주)에서 정산자료로 제출한 2014. 1. 31. 안전화 등 8개 안전용품 구매 대금 증빙서류는 교부목적과 다르게 위 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¹²⁵⁾에 사용한 안전관리비 지출내역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 안전관리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면 아니되는데도, 이를 검토·확인하지 않고 정산신청 내용대로 지급하여 국고보조금 2,046,400원¹²⁶⁾이 교부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조치할 사항 김해시장은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시정] 국고보조금 교부목적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고보조금 2,046,400원 상당액을 ○○○○○○(주)로부터 회수하여 국고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.

125) 2014. 1. 31. 안전화 등 8개 안전용품 구매 전자세금계산서 비교란에 ‘○○○현장’이라고 기록되어 있고, 건설공사대장 조회결과 위 공사를 도급한 ○○○○○○(주)에서는 2014. 1. 22. ‘○○항 ○○○ ○○○ ○○단지내 포장공사’를 (주)○○○으로부터 도급하여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 전자세금계산서의 비교란에 기록된 ‘○○○현장’이라 기록된 부분을 수정액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안전관리비 정산자료 제출

126) 산업안전관리비 3,817,990원에 일반관리비, 이윤, 부가세 등 포함한 5,116,000원에 대한 40%(2,046,400원)